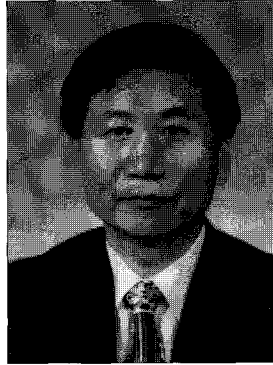


## 파렛트의 국제동향

(국제표준파렛트 회의보고서)



한국파렛트협회부회장 서 병 루

ISO TC51 한국대표  
(한국파렛트폴(주) 대표이사)

### I. 회의 내용

1. 회의명: ISO(국제표준화기구) TC51  
(파렛트전문위원회) WG6(표준  
파렛트실무분과위원회)
2. 안 건: ISO 6780(국제표준파렛트규격)  
개정 의 건.
3. 일 시: 1996년 6월 27일~30일(3일간)
4. 장 소: CANADA, TORONTO HILTON  
HOTEL 회의실
5. 참석자
  - 1) MR. JIM PEEVES  
WG6의 SECRETARY 및 CANADA대표
  - 2) MR. JOHN HARVEY, 영국대표
  - 3) MR. ALAN COLES, TC51대표
  - 4) DR. MARSHALL S. WHITE, 미국대표
  - 5) MR. HIROJI FUKUMOTO, 일본대표
  - 6) MRS. GUNILLA BEYER, SWEDEN  
대표
  - 7) MR. BYUNG YOON SUH, 한국대표

### II. 토의의 배경

1970년대 이후 국제간에 논쟁이 되어온 파  
렛트 규격이 1,200mm×800mm과  
1,200mm×1,000mm, 800mm×  
1,000mm로 3가지 모두 유럽의 지역의  
표준파렛트규격만 채택되어 있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가 유럽주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당시EEC  
창설 이후 1953년~1960년 8년간의 기나  
긴 토의 끝에 1,200mm×1,000mm의 파  
렛트를 국가표준파렛트로 채택하고 있던  
독일이 유럽표준파렛트인 1,200mm×  
800mm로 양보함에 따라 ISO에 있어 유  
럽은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이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등 유럽이외  
의 공업선진국들의 요구로 국제표준파렛트  
규격인 ISO 6780의 개정이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그이유는 해상용 컨테이너가 국제교역의  
수송수단으로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70년대에 들어와 해상용 컨테이너의 적재  
함 내치수 규격과 ISO 파렛트 규격이 적  
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제 7회 1979년 1월(영국런던)의 TC51회의에서부터 기존의 R198정규 ISO 규격이 아닌 권장파렛트규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규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합의 하였다.

제 8 회 TC51회의 (1981년 2월, 영국 런던)

제 9 회 TC51회의 (1983년 8월, 캐나다 오타와)

제10 회 TC51회의 (1985년 10월, 독일 함브르크)등의 7년간에 걸쳐 ISO 표준 파렛트규격을 결정하기까지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다툼이 계속 되었으나 최종합의는 ISO 파렛트 규격을 단일화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 ① 1,200mm×800mm : 유럽표준 규격기준(R198규격)
- ② 1,200mm×1,000mm : 독일, 네델란드 표준규격(R198)
- ③ 1,219mm×1,016mm(48"×40") : 미국표준규격
- ④ 1,140mm×1,140mm — 호주표준 규격 : 1,165mm×1,165mm  
일본표준규격 : 1,100mm×1,100mm

등 각 국가의 표준파렛트를 모두 ISO 6780 평파렛트규격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파렛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1,140mm×1,140mm규격은 해상용 컨테이너에 적합한 규격이라는 명분아래 호주와 일본이 연합하여 해상용 컨테이너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찬성협조로 가까스로 포함될 수 있었다.

이 규격은 -40mm공차를 허용하여 일본의 표준파렛트 1,100mm×1,100mm규격도 ISO 표준파렛트임을 명기하였다.

그러나 ③ 1,219mm×1,016mm(48"×40")의 규격과 ④ 1,140mm×1,140mm 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ISO파렛

트규격으로 채택되었다.

첫째 : 미국규격인 ③ 1,219mm×1,016mm (48"×40")의 규격은 미국이 Metric system으로 전환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둘째 : 해상용 컨테이너용 규격인

- ④ 1,140mm×1,140mm규격은 현재의 Series 1 컨테이너가 광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200mm로 바꾼다.

이와 같은 합의 결과에 따라 1988년에 ISO 6780 파렛트규격을 제정하였다.

이렇게하여 개정된 4가지 규격의 ISO표준 파렛트에 대하여, 1992년 9월 SPAIN의 MADRID에서 개최된 제 13 회 TC51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미국의 경우 1,219mm×1,016mm(48"×40")가 미국의 표준이 Metric system이 채택시기까지 일본의 경우 1,140mm×1,140mm는 해상용 컨테이너가 광폭으로 전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건부의 삭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표준파렛트에 48"×40"의 Metric system의 채택시까지라는 조건을 1994에 삭제하였으나 T-11형의 경우에는 아직도 광폭컨테이너 채택시까지라는 조건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1995년 5월에 개최된 TC51미국 워싱턴 회의에서 ISO 6780의 개정안을 마련할 Working Group 6을 설치하는데 유럽국가들의 반대를 설득하여 합의하였다.

한국이 이 회의에 P-member로 참여하여 WG6에 동의를 구하였다.

따라서 금번 규격개정시에 1,140mm×1,140mm의 조건부도 자동삭제 되도록 하여야 하며, T-11형 1,100mm×1,100mm규격도 ISO의 정식규격으로 채택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Ⅲ. 금번회의 WG6에서의 토의 내용

CANADA의 TORONTO에서 1996년 6월 27일~29일 기간에 개최된 금번 WG6 회의에서 ISO 6780의 개정안을 토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파렛트의 규격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본 WG6의 회의 개최전에 마련된 개정안에는 각 국가의 대표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모두 반영된 기초안이였다.

이 기초안을 토대로 현재의 ISO 6780규격과 각 국가의 표준파렛트 규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다.

(ISO 6780 표준파렛트 규격안)

구 분	규 격(mm)	
현 재	① 1,200×800	② 1,200×1,000
	③ 1,140×1,140 (-40mm까지 허용)	④ 48"×40" (1016mm×1219mm)
합 의 안	(정사각형)	(직사각형)
	① 1,140×1,140	① 1,200×800
	② 1,100×1,100	② 48"×40" (1016mm×1219mm)
	③ 1,067×1,067	③ 1,200×1,000

현재의 ISO 6780규격은 4종류이며, WG6의 기초안의 10종류인바, 이를 몇가지로 확정할 것인가 토의하였으며 결국 6종류로 결정할 것에 합의 하였다.

다음으로 이 6종류의 파렛트규격을 유럽지역 2규격, 미국, 캐나다 지역 2규격, 아시아 지역 2규격으로 하자는 방안과 정사각형(SQUARE TYPE) 3종류 직사각형(RECTANGULAR TYPE) 3종류로 하자는 방안이 논의 되었는데, 지역적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ISO가 국제표준규격임을 감안하여 정사각형 3규격, 직사각형 3규격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하였다.

금번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맨먼저 채택된

규격은 정사각형의 1,100mm×1,100mm 규격으로서 한국과 일본등 ASIA지역을 대표하는 표준파렛트임이 고려되었다.

두번째로 1,140mm×1,140mm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었으며 세번째로 1067mm×1067mm규격은 미국과 캐나다의 요청으로 채택되었다.

직사각형의 3가지 규격은 기존의 ISO 6780의 규격이므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ISO에서 -40mm공차허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던 T-11형 파렛트가 정식 ISO규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Ⅳ. 향후 한국의 대책

ISO 표준파렛트가 규격의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수송장비의 적재함 규격과 물류시설, 도로여건등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유럽과 미주, 아시아의 3대 지역의 표준파렛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특히 파렛트규격에 있어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 1,100mm×1,100mm가 현재의 ISO 6780 규격에서 1,140mm×1,140mm에서 -40mm 공차허용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정 하여온 불리한 입장이었으며 더구나 국제 해상용 컨테이너가 광폭으로 전환될 때까지만 사용한다는 한시적인 규격으로서의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ISO 해상용 컨테이너의 광폭화는 불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2가지 불리한 입장이 동시에 제거되므로 한국으로서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최종까지 확정되도록 노력 하여야하며 차후 TC51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